


2007. 10. 17(수) 10:00

 제140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등 3건
[심 사 보 고 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

1.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2
2.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3.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11

《의안번호 제2007 - 27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경제과)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0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0월 11일
- 마. 의안번호 : 제2007 - 27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과장 이 동 순)

가. 제안이유

-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 사업의 활성화, 상인조직 육성 등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재래시장, 상인, 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시설물, 편의시설,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

- 시장의 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 안 제15조부터 제18조)
-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4조)
-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2조)
-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30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1조부터 33조)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절차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4조부터 39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0조부터 제44조)
- 유효기관 및 경과규정 등(안 부칙)
 -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함.
 - 「거창군 재래시장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정부와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및 협약에 따라 위탁한 재래시장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협약 체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설물관리자 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서 종 진)

가. 조례안의 제정 의의와 배경

- 종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시행해 오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06. 4. 28)되어 '06. 10.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정되었던 「거창군 재래 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조례」는 폐지하고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신규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임.

- 거창군 재래시장의 현실태를 보면, 시설이 노후하고 경영 기법의 낙후, 대형유통점과 편의점 등 현대식 유통업태의 출현으로 편리한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금번 법률체계 개편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으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 상인조직 육성 등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나. 이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표준조례 권고안」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1) 이 조례안 관련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추가소요 예산 없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정도이며, 재원의 종류, 예산확보 방안, 집행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 안 제23조(상인회 설립) 제2항 중 “상인회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1점포당 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를 두고 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3) 안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4항을 보면 “군수는 등록된 상인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조문규정은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바, 이 항의 규정은 상인회에 예산지원을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등록된 상인회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은 이 조례안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간 중복성 방지를 위하여 제25조제4항은 “삭제”함이 타당함.
- (4) 안 제9장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와는 그 성질은 다르다 할지라도 부과·징수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이행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와 동일하므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둬으로써 조례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조례안에 “(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45조(시행규칙)을 제46조로 하고 제45조(지방세 준용)을 신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조례안 제25조 제4항을 삭제

⇒ 이 항의 규정은 상인회에 예산지원을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등록된 상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은 이 조례안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5조를 제46조로 하고, 제45조(지방세 준용)를 신설

⇒ 이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토록 하는 조항을 둬으로써 조례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임.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원 안	수 정 안
<p>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③(생략) ④군수는 등록된 상인회에 한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③(제정안과 같음) ④삭제</p>
<p>제45조(시행규칙) <신설></p>	<p>제46조(시행규칙)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의안번호 제2007 - 36호》

거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21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건설과)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7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0월 11일
- 마. 의안번호 : 제2007 - 36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최 광 열)

가. 제안이유

- 「도로법시행령」이 2007. 1. 5.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따라 조정하여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명을 “거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로 변경함.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조정(안 별표1)
 - 도로점용료 연차별 정액제 조정
 - 평균 38%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산정기준 유지

- 점용물의 종류 신설 및 수정(안 제1호부터 3호)
 - 돌출간판 신설, 진입로 ⇒ 진·출입로 등
- 법령변경으로 인하여 근거법규명 수정 및 자구수정(안 비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수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서 종 진)

가. 이 조례안은

- 그동안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가 적용되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9호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과 같이 건설교통부가 3~5개년도에 걸쳐 평균 38%인상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연도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이 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수정은, 법제처에서 그간 법령의 제명을 붙여 써 왔던 것을 2005. 1. 1. 이후 제·개정되는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명을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띄어쓰기 하는 것이며,

- 안 제7조 본문 중 점용료 산정기준 조항을 “제4조의 규정에 의거”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5조에 따라”로 바르게 수정하는 것임.
- 안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1을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예 따라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와 “경상남도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원만한 개정안으로 보여짐.
- 다만, 도로법시행령 개정사항이 금년 1월 7일 공포시행 되었으나, 조례개정시점이 늦었으므로 법령개정시점과 맞게 조례 개정도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07 - 33호》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농업기술센터)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0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0월 11일
- 마. 의안번호 : 제2007 - 33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가. 제안이유

-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하여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 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은 물론 FT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친환경농업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사업, 기술보급, 과제 발굴,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
-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급
- 친환경농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부정행위를 한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중단 및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한 고발 등
-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추진, 광역단지 운영의 총괄을 위해 사업단을 설치 운영하며, 사업단은 생산자협의체, 기능별협의체,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군수가 위촉함
 - 사업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서 종 진)

가. 이 조례안의 제정의의 및 배경

-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증산위주로 추진해 온 결과 농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농업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나. 이 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 농업육성조례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필요 조항임.
- 안 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제1항 본문 중 “심의·의결”과 안 제4조(위원회의 기능) 본문 중 “심의·의결”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나 “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위원회가 아닌 단체장의 자문기구의 성격에 불과하고, “의결”은 단체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잘못된 표현으로 보아지므로 “심의·의결”을 “심의” 또는 “심의·결정”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함.
- 안 제11조는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농림부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모형 기본설계 지침」에 의거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보아지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같은 조 제2항은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구성에 대한 조항으로 “사업단은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체, 기능별협의체,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 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체, 기능별협의체, 각 시설·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일반 군민들은 이 조례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사업단은 품목별 생산자 대표·마을대표 등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생산자협의체 및 기획·생산·마케팅·시설운영과 교육홍보 등을 주관하는 기능별협의체와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 제3조 중 “수정·의결”과 제4조 중 “수정·의결”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친환경육성위원회는 군수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띤 위원회로 검토되어 “의결”한다 라고 할 경우, 군수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표현으로 판단되므로, “심의” 한대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 안 제3조 제4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산림환경과장,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과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체 위원수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 항에서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과장을 삭제하고 “산림환경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로 수정하며,
- 또한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에 있어“사업단은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회, 기능별협의회,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고 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검토되어, 이 조문의 전단에 각 협의회나 시설장비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사업단은 품목별 생산자 대표·마을대표 등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생산자협의회 및 기획·생산·마케팅·시설운영과 교육홍보 등을 주관하는 기능별협의회와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로 하는 수정함이 타당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 ①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u>심의·의결</u>하기 위하여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③.(생략) ④산림환경과장,농정과장,농업지원과장,원예특작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심의·의결</u>한다</p>	<p>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 ①----- ----<u>심의</u>----- ----- -----. ②~③.(제정안과 같음) ④산림환경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u>심의</u>----- ----.</p>
<p>제11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 ①(생략) ②사업단은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회,기능별협의회, 각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생산자협의회 운영위원전원과 기능별협의회 대표,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대표와 사업단장과 부사업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단원으로 사업단을 구성한다. ③~⑧(생략)</p>	<p>제11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 ①(제정안과 같음) ②사업단은 품목별 생산자 대표·마을 대표 등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생산자협의회 및 기획·생산·마케팅·시설운영과 교육홍보 등을 주관하는 기능별협의회와 각 시설·장비 운영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 하며 -----. ③~⑧(제정안과 같음)</p>